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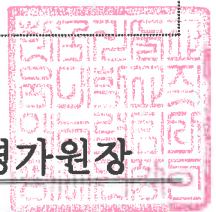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중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 * 인증평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 * 과정심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37조

2022년 4월 8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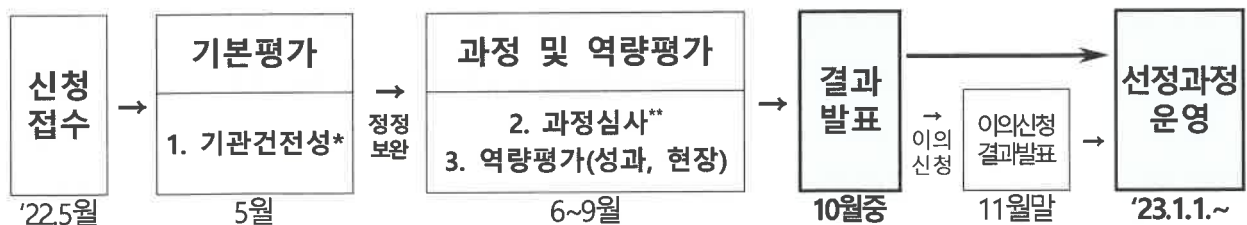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일원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하고,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동시에 실시
-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기본평가), 훈련성과 및 훈련실시 역량(역량평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훈련(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자격 부여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



* (기관건전성)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신용등급이 원클릭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훈련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등 보완 가능

** (훈련과정) 훈련교재, 시설·장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강사 신청정보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해당 항목은 조건부적합 항목임(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발표 후 조건부적합 과정은 조건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주요 변경사항>

추진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개편	(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심사평가 절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각각 별도 진행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일괄 진행
신청·접수	(인증평가) 2월 신청·접수 (과정심사) 4월 / 10월 신청·접수	➔	5월 일괄 신청·접수
신청 대상	① 신규 기관 ➔ (인증) 신규기관 (과정) 통합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동시 진행) * 혼합훈련(기존 스마트혼합훈련) 포함
	② 실적보유기관 ➔ (인증) 실적기관 (과정) 통합심사	➔	
	③ 다년인증 등급보유기관 ➔ (인증) 모니터링 (과정) 통합심사	➔	
	④ 공공훈련기관 ➔ (인증) 평가면제 (인증평가면제승인기관) (과정) 통합심사	➔	(인증) 기존 동일(인증평가 면제) (과정) 기존 동일(과정심사 신청)
	⑤ 원격훈련기관 ➔ (인증) 원격기관 (과정) 원격과정심사	➔	(인증) 기존 동일(원격 인증) (과정) 기존 동일(e-simsa과정심사)
	⑥ 디지털 신기술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 (인증) 선택권 부여 (과정) 과정심사	➔	(인증) 기존 동일(선택권* 부여) (과정) 기존 동일(과정심사 신청) *2021년도 종료실적은 2022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반영 희망 여부 선택 가능
심사평가 기간	(기관인증) 3월 ~ 11월 (과정심사) 5월 ~ 7월/10월 ~ 12월	➔	5월 ~ 10월
결과발표	(기관인증) 10월 발표(이의신청 11월) (과정심사) 7월(이의 9월)/12월(이의 2월)	➔	결과발표 : 10월 21일 (이의신청발표 : 11월 30일)
조건부 심사	(과정심사) 8월(이의 9월)/1월(이의 3월)	➔	11월 (이의신청 12월)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기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훈련기관인증평가, 제4장 과정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동 공고문과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에 명기된 사항에 따름

II. 심사평가 신청 접수

1

실시가능직종 등록

□ 과정심사를 신청할 훈련직종(NCS 소분류 기준)은 과정심사 신청 전에 등록·승인받아야 하며, 미승인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2. 1. 10.(월) 10:00 ~ 4. 22.(금) 18:00

※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훈련기관평가 → 2022년도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

2

신청접수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신청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각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 훈련시설 유형 중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 관련 교육만 심사 신청 가능함

-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HRD-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훈련기관번호(9자리)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대상)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3년 이상의 다년인증등급 보유 기관(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인증평가>대상 훈련인 집체훈련(혼합훈련 포함) 중 실업자 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실업자계좌제), 재직자훈련(재직자계좌제, 사업주위탁훈련)

※ 단, 원격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는 별도로 진행

<훈련유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구분>

기관유형	훈련유형	신청구분	
		인증평가	과정심사
집체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일반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원격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신청	추후 관련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공공직업 훈련시설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 받은 기관	면제	신청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실적은 기본적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훈련의 2021년도 종료실적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함. 다만 평가신청기간 이후에는 선택사항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불가

□ 신청 및 정정·보완기간

○ (신청기간) 2022. 5. 2.(월) 10:00 ~ 5. 11.(수) 18:00

- 2022. 4. 18.(월)부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 사용(임시저장 및 테스트 기능 등) 가능
- 작성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전산상 동의서 체크 필수)

○ (정정·보완기간)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2022. 6. 2.(목) ~ 6. 7.(화), 18:00까지 일부 항목* 정정·보완 가능

*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시설, 장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 총 6개 항목 및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정정에 한하며, 훈련내용 정정 및 훈련과정 회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HRD-Net 가입 및 심사평가시스템 설치, 로그인 등의 상세내용은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전산편 참고

- 평가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작성중'일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
- 2022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경로>

기관유형	심사평가 신청 유형	신청 경로	
		인증평가	과정심사
집체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평가/과정심사)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인증과정 일원화)	
	인증평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과정심사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특화과정 등)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과정심사
원격 훈련기관	인증평가/과정심사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e-simsa시스템 > 원격훈련심사

□ 심사평가 방법

- 기본평가, 과정 및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적합과정 선정 및 훈련 기관 인증등급 판정

용어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용어 정의

① 기본평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제12조제1항
② 과정심사: 사전심사 + 과정적합성 심사 + 훈련비심사	제19조, 제20조
③ 역량평가: 훈련성과 평가 + 훈련실시역량 평가(현장평가)	제12조제1항
④ 인증평가: 기본평가 + 역량평가	제12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기본평가*는 훈련기관의 법규위반 여부(준법성)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 적합·부적합 결정

* 기본평가 감점사항은 정정기간(6.2~6.7) 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 공고는 없으므로 감점사항의 보완 필요 시 반드시 정정기간 내 해당 자료 등을 입력해야 함

- 과정심사는 기본요건, 과정적합성(신청제한분야, 과정적정성, 훈련성과 및 산업·지역인력수요 등), 훈련비 등을 심사하여 훈련과정 선정
- 역량평가는 훈련성과 평가(취업률·고용유지기간·만족도 등) 및 현장평가(시설·장비, 교·강사 등 훈련실시역량) 등을 평가하여 훈련기관 인증등급 부여

- 훈련기관 인증등급 및 과정심사 결과는 2022.10.21.(금)에 일괄 발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별 주요 적용사항>

구분		과정신청 여부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훈련성과	현장평가
실적보유 기관	인증갱신 우수희망	훈련과정신청	○	○	○	○	○
		훈련과정신청	×				
	모니터링	훈련과정신청	○	○	○	○	×
		훈련과정신청	×				
신규기관 (실적미보유 기관 포함)	-	훈련과정신청	○	○	○	×	○
		훈련과정신청	×				
다년인증 등급 보유기관	인증갱신	훈련과정신청	○	○	○	○	○
		훈련과정신청	×				
	모니터링	훈련과정신청	○	○	○	○	×
		훈련과정신청	×				

III. 기본평가

1

기관건전성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 제3장 훈련기관 인증평가 준용

□ 준법성, 재정건전성 등 평가

- 관련 법 준수 여부, 세금 체납 이력 및 신용 수준 등을 토대로 기관의 준법성과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20점 이상 감점 시 부적합 판정

<기관건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관 건전성 평가	준법성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20점 이상 감점 시 부적합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임금체불 이력	
		최저임금 위반 이력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신용수준	
	기타	사회적 물의 등 ※ 2023년부터는 최근 3년간 준법성 평가 결과 동일 항목 5점 이상 감점 발생 시에도 인증유예 예정	

1. 준법성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서면평가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2021. 1. 1. ~ 12. 31.에 발생한 경우 1인당 5점 감점(훈련실시 이력에 관계없이 해당사항 발생 시 감점 적용)

* 시정지시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경우 해당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시 감점 적용

○ 제재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 부정수급, 허위 과정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일 또는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2021. 1. 1. ~ 12. 31.인 경우 처분수준에 따라 건당 1 ~ 20점 감점

- 2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의 경우, 처분의 유효기간이 2021. 1. 1. ~ 12. 3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

-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거나,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부여,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인증유예 부여*

* 인증유예 받은 시점 이후 도래하는 심사평가부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등급 획득 가능

- 인증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사회적 물의, 준법성 연속 감점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증유예 즉시 부여 및 보유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훈련기관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법적 처분(예: 훈련 운영과 연관된 성희롱이나 폭행 등에 따른 형사처벌, 직업훈련 운영 관련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지배·관리하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예시) 인증유예·부정훈련·행정처분 발생기관이 인증유예 회피를 위해 신규기관을 설립·대표자를 변경·타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2023년 시행 심사평가부터 최근 3년간(2021~2023년) 준법성 평가 결과, 동일 항목*에서 5점 이상의 감점이 연속하여 발생한 기관은 기관건전성평가 부적합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예정**

* ①임금관련 법 위반 이력 및 ②제재처분 이력(지도점검 불응 과태료 부과 포함)으로 항목 구분

** 2021년~2023년 실시된 인증평가의 1단계 준법성평가 결과 기준 및 2023년도 평가실시 연도 처분내역을 포함하여 반영

2. 재정건전성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 서면평가

○ 세금체납 여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점씩 감점
- 세금 체납 여부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연계된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에서 훈련기관이 제출한 납세증명서*를 기반으로 평가

* 2022.3.1.~6.7. 기간 내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만 인정

*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 상에서 전자 발급 가능하며, 전자 발급 방법 및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공동대표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 방법은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고

- 심사평가 신청 기한("22.5.2~5.11.) 내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정정·보완 기간("22.6.2~6.7.) 내 추가로 납세증명서 제출 가능

○ 신용수준 평가

-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하 해당 시 10점~15점 감점
- 신용수준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연계된 '원클릭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에서 훈련기관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을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조회하여 평가(정보제공 동의 필수)

*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 상에서 전자 발급 가능하며, 전자 발급 방법은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고

<신용수준 평가 감점기준>

사업자 유형	감점기준
개인/법인사업자 (평가기관 전체)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D등급: 15점 감점

- (추가 서류 제출) 심사평가 신청 기한("22.5.2~5.11.) 내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감점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정·보완기간("22.6.2~6.7.) 내 신용수준 평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가능

<신용수준 평가 추가 제출 가능 서류 및 감점 기준 >

사업자 유형	제출 가능 서류 및 감점 기준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15점 감점

* 국세청 발급 2020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별도 공지하는 추가서류제출 마감일에 유효한 기업신용보고서만 인정(심평원 선정 신용평가기관 외 타신용평가기관 발급분 제출 허용)

** 별도 공지한 추가서류제출 마감기한 내 발급받은 개인신용보고서만 인정하며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불가시 법인 사업자 평가기준(자료) 적용

IV. 과정 및 역량평가

1

과정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 제4장 훈련과정 심사 준용

1. 신청대상훈련

□ 신청대상(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 과정)

훈련대상	훈련사업	구분(약어)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국기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실업자)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재직자)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사업주 위탁

2. 신청요건

□ 실시가능직종(HRD-Net) 및 NCS 확인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인정취소 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만 운영 가능

- 신청·접수할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는 반드시 NCS확인강사로 승인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교·강사는 훈련을 진행할 훈련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실시

□ 실업자 국기 진입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기관

- 우수훈련기관 또는 관련분야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
- 국기훈련 선정 물량은 변경된 국기직종(81개)기준으로 2022년 4월말 별도 안내 예정

[실업자 국기 진입 요건]

- ▶ (관련 대상) 아래 ① ~③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
 - ① NCS소분류별 40시간 이상 계좌제(실업자+재직자) 과정 또는 실업자 국기 직종(연계된 NCS 소분류 포함)별로 5인 이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 통합심사(혼합훈련 혼합훈련 추가 심사 포함), 일반고 특화 중앙부처 국기훈련 과정평가형과정 모두 해당
 - ② 2022년도 운영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혼합훈련 포함)에 해당 실업자 국기직종으로 적합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일 기준 우수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 (실적 산정 기간) 2020. 4. 1. ~ 2022. 3. 31. 내 개시 또는 종료
- ▶ (실적 산정 범위) 실업자 국기 편성가이드에 매칭된 NCS소분류*
 - * (예시) 디지털디자인 신청가능 소분류 ① 정보기술개발(200102), ② 디자인(080201)

3. 신청 가능 과정 수

□ 산정기간 및 산정대상

- 산정기간: 2021. 1. 1. ~ 2022. 3. 31. 내 종료된 과정
- 산정대상: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혼합훈련 추가 심사 과정 포함)

□ 신규기관 신청가능 과정 수

- 신규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가능 과정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 가능 (혼합훈련 포함)
- 실적산정 기간 내 실적이 있는 경우 일반기관 산정기준 적용

<신규기관 훈련유형별 과정심사 신청 가능 수>

훈련유형	신청 가능 수	총 신청
실업자 계좌제	최대 5개	최대 10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최대 10개	

□ 우수 및 일반기관 신청가능 과정 수

-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일 기준의 인증등급* (일반, 우수, BHA)에 따라 훈련사업별 신청 가능 수 부여(혼합훈련 포함)
- 조건부 인증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가능 과정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 가능(실업자 계좌제 최대 5개)

4. 훈련과정 편성방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

□ 공통사항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기준(이하 “훈련기준”)이 개발된 1,039개 직종은 반드시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훈련기준 확인경로[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자료실 → 훈련기관평가 → [NCS 기반 훈련기준(1,039개 직종)]

- 총 훈련시간 중 실업자 국기는 60%, 계약제(실업자, 재직자) 및 사업주 위탁은 40% 이상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기준 미충족 시 '선정제외', 훈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

※ 단, 혼합훈련의 NCS 적용 비율은 집체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격보조훈련 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실업자훈련

- NCS '능력단위'만 사용 가능

□ 재직자훈련

- NCS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단위로도 과정 편성 가능

- '능력단위요소'로 편성한 과정은 해당 능력단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편성이 가능*하며, 편성의 적정여부는 별도 심사

* (예시) 능력단위 훈련시간이 20시간인 경우, 능력단위요소는 각 1~20시간(1시간~능력단위 훈련 시간의 100%) 범위에서 편성 가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과정

- 재직자훈련과정 중 단기과정(40시간 미만)과 법정직무훈련은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 그 외 비적용 과정 신청 가능 여부는 설명회 자료집의 'NCS 적용 여부 가이드' 참고

- 국기직종 중 스마트팜구축 직종은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혼합훈련과정(기존 스마트혼합훈련)

□ 과정편성 요건

- 훈련대상별 편성 기준에 따라 집체훈련과 원격보조훈련, 쌍방향 훈련을 혼합하여 편성

- 원격보조훈련은 반드시 전공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야 하며,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로만 편성 불가

-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훈련(쌍방향훈련)으로만 단독 편성할 수 없으며, 집체훈련과 원격보조훈련의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편성 시간은 총 훈련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집체훈련의 NCS 소양교과 시간과 원격훈련의 직업기초능력 콘텐츠 편성 시간의 합이 총 훈련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미흡 판정

<훈련대상별 혼합훈련 편성 기준>

훈련대상	혼합훈련 편성 기준
국기훈련	소정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이고, 총 훈련시간 대비 원격보조훈련 시간은 최소 5% 이상(최소 20시간 이상), 쌍방향훈련을 포함한 원격훈련은 총 훈련 시간 대비 50% 이하일 것
실업자 계좌제	소정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고, 총 훈련시간 대비 원격보조훈련 시간이 10% 이상(최소 20시간 이상), 쌍방향훈련을 포함한 원격훈련은 총 훈련 시간 대비 50% 이하일 것
재직자 계좌제	소정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총 훈련시간 대비 원격보조훈련 시간이 10% 이상(최소 20시간 이상), 쌍방향훈련을 포함한 원격훈련은 총 훈련 시간 대비 50% 이하일 것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은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을 통해 원격보조훈련 및 쌍방향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콘텐츠의 1차시(1시간)는 재생시간 기준 25분 이상으로 구성하고 재량학습활동을 편성*

* 1차시의 재생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 재량학습활동 제외 가능

- 25분 미만인 차시가 일부 포함된 콘텐츠는 재량학습활동을 과제형*으로 편성

* 실습형 콘텐츠인 경우 실습형 과제, 이론 콘텐츠인 경우 서술형 과제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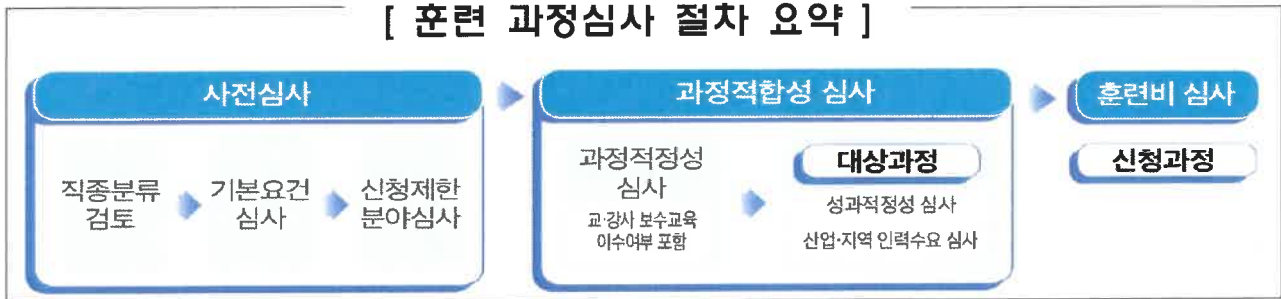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등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집체훈련'으로만 교육해야 하는 과정은 혼합훈련으로 신청 불가

○ 혼합훈련 과정 설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과정심사 신청 전에 스마트과정심사센터로 컨설팅 신청*

* (신청 경로) www.ksqa.or.kr > 기본 화면 하단 > 혼합훈련컨설팅 신청

5. 심사절차 및 기준

[훈련 과정심사 절차 요약]



① 사전 심사

□ 직종분류검토

- NCS 비적용 훈련과정이 훈련내용에 부합하는 NCS직종으로 적정하게 신청되었는지 검토

□ 기본요건심사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 신청자격, 훈련과정 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필수 기준 심사

* 심사평가 신청 전 지정시설 유형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시가능직종을 승인 받아야 하며, 미승인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 불가

□ 신청제한분야 심사

-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 등 신청제한분야 해당 여부 심사

※ 훈련유형별 신청제한 분야는 [붙임10] 참조

②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 과정적정성 심사

- 훈련내용·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의 적정성 및 우수성 심사

※ [붙임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과정적정성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심사를 신청한 훈련과정과 직종 및 주훈련대상이 동일한 훈련과정 운영 실적(NCS 세분류, 2021.1.1~12.31 종료과정 기준)을 보유한 경우 과정적정성 심사 완화 적용(실업자 국기 제외)

- 과정적정성 심사 완화 대상 과정은 심사 기준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교·강사 부적합 등의 이력이 있는 과정은 심사 실시
- ※ 과정심사 완화 대상 과정 중 행정처분 이력(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일 기준 2021.1.1.~ 2021.12.31.)이 있는 직종 또는 수료인원이 없는 직종 제외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심사]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의2에 따른 교·강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
 - 2022. 1. 1. ~ 9. 30.까지 훈련에 참여한 훈련시간 또는 일 수에 따라 교·강사 기초 교육 또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가 1명 이상 포함된 훈련과정은 조건부* 판정
 - * 조건부 심사(심사결과발표일~12.31.)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종 과정 승인
 - 과정심사 결과 공고 시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이라도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강사가 2022.12.31.까지 기초 또는 기본 교육 대상*이 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정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훈련교·강사는 기초교육 2시간 이상 / 연간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교·강사는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 * 기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혼합훈련 심사(기존 스마트혼합훈련)

- 혼합훈련 운영 전략이 미흡하거나, 집체-원격 교과 간 내용이 과도하게 중복되는 등 연계성이 부적정한 경우 기존 승인 이력이 있어도 현재 심사 기준에 따라 미흡 판정
- 집체훈련의 NCS 소양교과와 원격훈련의 직업기초능력 콘텐츠를 시간을 합산하여 총 훈련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미흡 판정
 - ※ [붙임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혼합훈련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 정정·보완기간(22.6.2.~6.7.)에는 집체-원격 교과목 등 훈련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재량학습활동 등 운영 전략만 수정 가능
- (원격훈련 콘텐츠) 자체 또는 조달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은 2022.6.30.(목) 18:00까지 활용하는 LMS에 전체 콘텐츠를 탑재* 완료해야 하며,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 미흡 판정
 - * 공공콘텐츠만 활용하는 과정은 콘텐츠 제출(탑재) 제외
- (원격훈련 LMS) 혼합훈련이 가능한 LMS 보유 여부 심사

- LMS(자체 LMS, STEP 학습관리시스템 등)를 既 보유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해당 LMS로 훈련과정을 신청
- LMS가 없는 훈련기관은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거나, '자체 LMS'를 확보

<혼합훈련 LMS 유형 및 구축 방법>

LMS 유형	구축 방법
STEP 학습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혼합훈련 과정 최종 적합 시 STEP 분양 ※ STEP 활용 예정 기관은 2022.5.20.(금) 18:00까지 http://shub.step.or.kr에 신청서 제출 필요 ※ 신규 분양인 경우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가능한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
자체 L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LMS를 구축하거나, 직접 임대한 LMS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LMS 인증을 받아야 함 ※ 자체 LMS 인증 절차는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

□ 성과적정성 심사(실업자 계좌제)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까지 적합(또는 조건부적합)된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정 중 직종별(NCS 소분류)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
- (심사방법) NCS소분류 기준으로 아래에 따라 구분하고 심사대상은 성과적정성 지표별 산정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저성과 훈련과정 선정 제외
- 심사 신청 과정 중 혼합훈련과정에 한하여 혼합훈련 종료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이 있는 경우 운영 실적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운영 실적 가점이 없는 경우 개발 가점 1점 부여
- ※ 세부 기준은 [붙임6] 과정심사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 인력수요 지표별 산정 기준 참고
- ※ 2023년 시행 심사평가부터 혼합훈련과정 관련 가점 적용 제외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정 성과적정성 심사기준>

구분	기준	결과
심사대상 (수료인원 5인이상)	NCS소분류 직종별 하위 30%가 되는 기준점수* 미만 과정 * 기준점수는 지표별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산정함	적합(미제한)
		부적합
심사제외 (수료인원 5인미만)	신청한 NCS소분류 직종의 수료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적합(5회차 제한)
	신청한 NCS소분류 직종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적합(5회차 제한)
	20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 성과적정성 심사 없이 회차 제한으로 선정된 과정을 미개설 하거나 5인 이상 실시하지 않은 직종	부적합
NCS소분류 기준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 미발생(0명) 또는 취업률이 0%인 훈련과정		부적합

- (심사우대) 자영업자 특화과정, BHA훈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
- (산정대상)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혼합훈련 추가 심사 과정 포함)
 - * 「특별인증평가 '1년 인증' 등급보유기관 대상 20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추가 공고(2017.12.28.)」에 따른 선정과정 포함
 - 2020년 이전 개시 과정: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정' 참여 '실업자 훈련생'
 - 2020년 이후 개시 과정: '40시간 이상 일반계좌제 훈련과정' 참여 '실업자 훈련생'
 -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무관
- (추가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과정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 과정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① 지역 시·군단위 기준 지역 내 선정과정이 없는 경우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가능
- ② 경제상황, 지역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가능

□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실업자 국기)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 적합(또는 조건부적합) 실업자 국기과정
 - 수료인원과 관계없이 수료율 또는 취업률이 0%인 훈련과정은 부적합 판정
- (심사방법) 코로나 19 대응 심사 완화 기조 유지
 - 심사 신청 과정 중 혼합훈련과정에 한하여 혼합훈련 종료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12.31.)이 있는 경우 운영 실적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운영 실적 가점이 없는 경우 개발 가점 1점 부여
 - 2022년 시행 심사평가부터 과정심사의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가점은 제외하고, 동점 발생으로 물량이 초과될 경우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편성 가이드' 활용 비율(권장, 선택)이 높은 과정을 선정
 - ※ 세부 기준은 [붙임6] 과정심사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 인력수요 지표별 산정 기준 참고
 - ※ 2023년 시행 심사평가부터 혼합훈련과정 관련 가점 적용 제외

- 지표별 산정기준(국기직종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및 순위를 부여 후 권역·직종별 선정규모(인원) 내에서 높은 순위의 훈련과정을 우선하여 선정

※ 2022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변경 직종 [붙임기 참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42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변경 공고(2021.10.25.) 따라 통합·분리된 직종은 발생한 실적을 통합하여 산정

- 평가 점수가 선정 순위 내에 포함되어도 훈련기관의 훈련 실적 등 역량을 고려하여 배정 물량을 제한 할 수 있음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기준(실업자 국기)>

선정규모	대상	점수 산정 방법
90%	운영실적이 있는 훈련과정	취업률(40점) + 고용유지기간(20점) + 가·감점* (직종별 평균취업률의 70%미만인 경우 제외)
10%	90% 미선정 과정 또는 실적없음 (직종별 수료인원 5인 미만 포함)	성과창출가능성(20점) + 가·감점

* 혼합훈련과정에 한하여 혼합훈련 운영·개발 여부에 따라 가점을 최대 2점까지 부여하고, 국기 편성가이드 준수 여부 가점은 적용 제외

- **(심사우대)** 우수훈련기관의 그린뉴딜, 소재·부품·장비 뿌리 및 조선업 관련 직종, BHA훈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단, 저성과 과정은 제외)

*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를 통해 훈련운영 성과가 우수한 과정을 선정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운영인원 추가 배정

- **(산정대상)**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혼합훈련 추가 심사 과정 포함)

* 「특별인증평가 '1년 인증' 등급보유기관 대상 20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추가 공고(2017.12.28.)」에 따른 선정과정 포함

- **(추가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과정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 과정을 추가* 또는 초과선정 할 수 있음

※ 권역·직종별 훈련물량(훈련인원)은 4월말 별도 안내 예정

- ① 특정 권역·직종의 선정물량이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신청이 있으면, 해당 직종의 타 지역 훈련과정 선정현황 및 추가적인 인력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 ② 특정 직종의 선정물량이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신청이 있고, 해당 직종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정
- ③ 경제상황, 지역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특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역, 직종별 선정물량을 초과하여 선정 가능
- ④ 그 외 권역·직종의 훈련과정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수 훈련과정 추가 선정 가능

- **(기타사항)** 선정된 훈련과정은 직종별 과정의 정원을 합산하여 '직종별 훈련가능 인원'이 부여되며, 부여된 훈련가능 인원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단, 집체훈련과정과 혼합훈련과정 간 정원 합산은 불가
- **(중장년특화 훈련)** 해당 국기 직종*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중장년 (만 40세 이상) 참여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중장년 훈련생은 '직종별 운영가능 훈련인원'에서 미차감
 - * 관련직종(11개): 친환경 건축시공, 건축설비설계시공, 열·냉동기계, 내선공사, 전기 시스템제어, 태양에너지, 스마트의류, 환경보건관리, 스마트팜구축, 특수용접, 건축목공
-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는 '직종별 훈련가능인원'에서 미차감

③ 훈련비 심사

-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은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여 훈련비를 지원단가의 150%(고속련·신기술 최대 3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비 심사 신청 시 훈련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출한 증빙자료 등은 훈련비 정산을 위하여 보관
 -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한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음
 - ※ 훈련비산출내역서 작성 예시와 양식은 [별첨1~3] 참고
 - 신청한 훈련비는 심사를 통해 항목별로 조정될 수 있음
-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과정으로 판정하고,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 ※ [붙임5]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고급 및 특화과정 훈련비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평가유형 분류

- 2021.1.1.~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또는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 유무에 따라 역량평가 대상을 구분

<훈련실적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역량평가 대상 구분>

구분	내용
실적보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 ~ 2021.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있으며 2022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2023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 (이 경우, 현장평가 참여 선택 필수)
신규기관 (실적미보유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관)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위탁훈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 (실적미보유기관) 2021.1.1. ~ 2021.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 ※ 단, 2023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을 경우 모니터링 대상 기관으로 분류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 해당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자체 평가 장치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받은 훈련기관은 인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훈련과정 심사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의 통합심사 메뉴(기존)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2022년도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신규 우수훈련기관 선정 희망기관 포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유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단, 2021년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선택 불가)

□ 평가항목

- 역량평가는 훈련성과(취업률·고용유지기간·만족도 등) 평가와 시설·장비, 교·강사 등 훈련실시역량 평가(현장평가)로 구분
 - 훈련성과 평가는 서면 및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토대로 훈련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평가대상기간(2021.1.1.~2021.12.31.) 내 훈련 종료실적을 보유한 기관' 대상으로 진행
 - 현장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을 실제 방문하여 훈련기관의 준비, 운영, 관리 등의 종합적인 훈련실시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현장평가 참여 필수 및 선택(참여희망) 기관' 대상으로 진행하고, 심사평가 신청 시 기관이 직접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1. 훈련성과 평가

□ 평가대상

- 훈련운영을 통해 종료실적이 발생한 실적보유기관에 한하여 성과 평가 실시(훈련 종료실적이 미발생한 실적미보유기관은 성과평가 제외)

□ 성과 산출방식

- 훈련성과를 산출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뒤 60점 만점기준으로 점수 부여

<실적보유기관(집체)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훈련성과 평가 (60점)	(A) 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방식		
	- 훈련기관별 평가대상 훈련생에 대해 실업자와 재직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실업자와 재직자 실시인원 비중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		
	성과평가 점수(최대 60점)		
	훈련생 유형별 평가(45점)		공통지표(15점)
	실업자 훈련생	재직자 훈련생	
	일반취업률(15점)	-	훈련이수자평가(12점)
	고용유지기간(10점)	-	개설률(3점)
	수요자만족도(10점)	수요자만족도(25점)	(가점) 혼합훈련 LMS 구비 및 과정 종료실적(최대 2점)
	수료율(10점)	수료율(20점)	(감점) 정부지원 LMS 사업 참여 후 혼합훈련 미개설(-1점)
	(가점)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임금수준(최대 3점)	-	-
①	②	③	
실업자지표 점수 × 실업자 실시인원 비중(%)	재직자지표 점수 × 재직자 실시인원 비중(%)	공통지표 점수	
점수부여 : (① + ②, 45점 만점) + ③(15점 만점) 점수 합산			
(B) 훈련생 통합평가 방식			
- 훈련기관의 실업자와 재직자 실시인원 비중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성과평가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			
* 일반취업률 및 고용유지기간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5점)·훈련이수자평가(12점)·개설률(3점) 지표 별도 배점 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성과 평가 (60점)	일반취업률	15점	
	고용유지기간	10점	
	수요자 만족도	10점	
	수료율	10점	
	훈련이수자평가	12점	
	개설률	3점	
	가점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임금수준, 혼합훈련 LMS 구비 및 과정 종료실적)	최대 5점	
	감점 (정부지원 LMS 임대지원사업 참여 후 혼합훈련과정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	-1점	
※ (A)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방식과 (B)훈련생 통합평가 방식으로 각각 점수를 산출한 뒤 훈련기관별 유리한 점수 부여			
※ 2023년도 심사평가부터는 (A) 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방식만 적용 예정			

<실적보유기관(원격)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훈련성과 평가 (60점)	실업자 훈련기관	일반취업률	15점
		고용유지기간	10점
		수요자 만족도	10점
		중도탈락률	10점
		과정운영실적	5점
		과정심사 적합률	5점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가점(취업자 임금수준, 혼합훈련 개발·운영 또는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최대 5점
	재직자 훈련기관	수료율	20점
		수요자 만족도	20점
		훈련과정 등급	10점
		과정심사 적합률	5점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가점(스마트훈련, NCS 적용 과정 개발·운영 비율, 혼합훈련 개발·운영 또는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최대 5점

□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 보유기관 훈련성과 모니터링 평가**

- 다년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 평가 실시
 - * 2021년도 훈련과정 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의 경우 기관건전성 평가만 진행(훈련 성과평가 미적용)
- 훈련성과 모니터링 항목 및 배점은 실적보유기관 성과평가 지표와 동일

2. 현장평가

□ **현장평가 대상**

- **(현장평가 참여 필수)** '2022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관', '가장 최근에 획득한 인증등급이 인증유예인 기관', '2021년 1년인증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훈련 실적미보유기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 훈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필수' 대상에 해당
 - * '21년도 현장평가를 참여하여 1년인증을 받은 기관 중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실적미보유기관은 현장평가 면제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현장평가 참여 선택)** 실적보유기관 중 2023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단, 2022년도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에 반드시 참여 필요

- **(현장평가 참여 불가)** 2023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1년에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기관은 현장평가 참여 신청 불가

□ **현장평가 대상직종(NCS 소분류 기준) 선정**

-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직종 중 최대 3개를 선정하여 현장검증 실시
 - **(1순위)** 직전연도 훈련실적(실시인원)이 가장 높은 직종(1개 직종)
 - **(2순위)** 신규로 신청한 훈련과정(직전연도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의 직종(1~2개 직종)
 - **(3순위)** 1~2순위를 제외하고 훈련기관이 선택한 직종(1개 직종)
 - **(우선적용)** 과정심사에서 현장검증이 필요한 직종

<실적보유기관 · 신규 현장평가 대상 직종 선정 기준(집체훈련기관)>

구분 순위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1	직전연도 훈련실적(실시인원) 가장 높은 직종(1개 직종)	신규로 과정 신청한 직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1~2개 직종)
2	신규로 과정 신청한 직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1~2개 직종)	훈련기관 선택한 직종(1개 직종)
3	훈련기관 선택한 직종(1개 직종)	-
우선적용	과정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종	과정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종

□ **현장평가 내용 및 방법**

- 기관경영, 훈련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관리 등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별 역량을 평가하여 실적보유기관 40점 만점, 신규기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실적보유기관 · 신규 현장평가 항목(집체, 원격 훈련기관)>

평가항목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계	40점	100점
기관경영	6점	25점
훈련과정 관리	8점	20점
(집체)훈련시설·장비, (원격)훈련인프라	10점	20점
훈련전담인력	10점	20점
훈련생 관리	6점	15점

※ [붙임1]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평가기준 참고

[붙임2]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평가 원격훈련기관 평가기준 참고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현장평가 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총평 시 안내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정요건 재검토(평가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훈련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서면) 실시
- 훈련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활용도 등을 평가*

*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 인터뷰 등 실시

- 현장검증 대상직종의 수,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위원 수, 평가 시간 등 현장평가 세부 운영사항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시간 및 평가위원 구성 >

구분	집체훈련	원격훈련
평가시간	2~5시간	
평가위원 수*	훈련전문가 2명, 내용전문가 1~3명 등 총 3~5명	원격훈련전문가 2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에 참관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일정

-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14일 이전 훈련기관에 알림
- 과정심사에서 모든 훈련과정에 면제되는 훈련기관 또는 정정·보완이 필요 없는 훈련기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 (5.25)부터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V. 심사평가 결과 확정 및 발표

1

훈련기관 인증등급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 제3장 훈련기관인증평가 준용

1. 인증등급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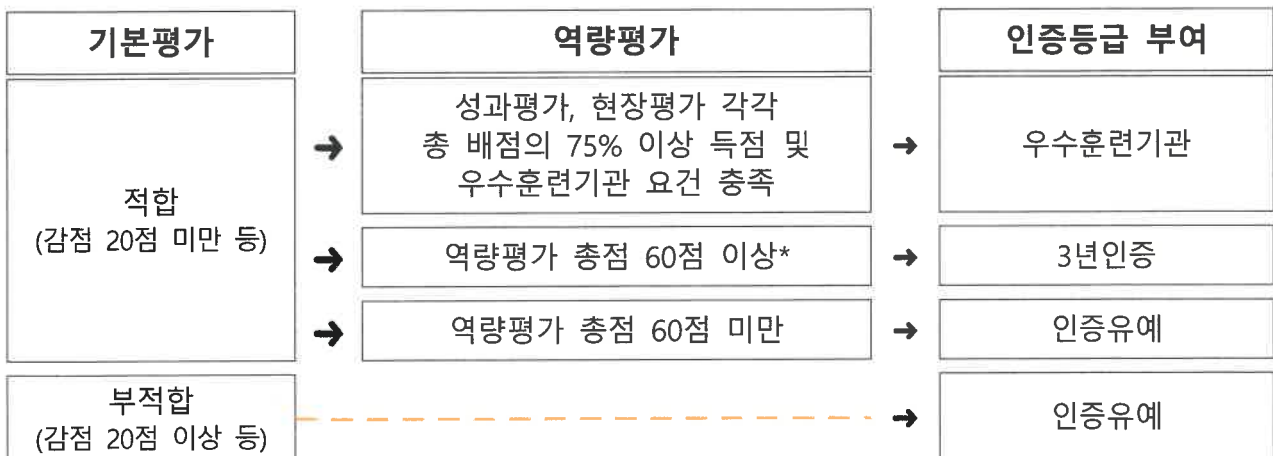
□ 공통사항

- 최종 결과발표일 이후라도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또는 인증유예 해당사항 추가확인(또는 발생) 시 인증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기본평가에서 감점 20점 이상인 경우 과정 및 역량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 실적보유기관

- 훈련성과 평가, 현장평가 영역의 취득 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3년 인증, 인증유예로 인증등급 부여
- 훈련성과 평가 및 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이상 득점을 비롯한 우수 선정요건 충족 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유효기간 기본 3년 외에 추가 2년 부여, 총 인증기간 5년)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부여>



*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신규기관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인증등급 부여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부여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	1년인증*
	→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	인증유예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 기본평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로 조정, 성과평가 배점(60점)의 40%(24점)미만 획득 시 '조건부인증' 부여

※ 조건부인증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조치사항으로,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 평가부터는 조건부인증은 폐지하며 성과평가 총점의 40% 미만 시 인증유예

- 2021년 조건부인증 획득기관이 2022년도 평가에서도 조건부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도 평가 결과는 인증유예 부여

- '조건부인증' 기관은 과정심사 신청 수 및 물량 배정 등에서 차등 제한 적용

* 훈련과정 심사 시 신규기관에 준하는 패널티 적용(원격훈련과정 또는 타훈련사업의 경우 해당 공고문에 따름)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인증등급 부여>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부여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	성과평가 배점의 40%이상 취득 (60점 만점 중 24점 이상)	→	보유등급 유지
	→	성과평가 배점의 40%미만 취득 (60점 만점 중 24점 미만)	→	조건부인증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	인증유예

2. 인증등급에 따른 유효기간

□ 유효기간 부여방식

○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인증평가)의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현장평가 참여 연도 기준으로 부여)

- 현장평가 미참여(모니터링 대상기관 등) 기관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등급의 유효기간으로 적용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사회적 물의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역량평가 대상별 인증등급 유효기간

○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부여
3년인증	○ 유효기간 최초 시작일*로부터 3년 * 2022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기관 : 2023.1.1.부터
인증유예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 우수훈련기관은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기본 3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부여 가능

※ 2022년 인증등급을 신규 획득한 경우 2023.1.1부터 유효기간을 부여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까지 유효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함

○신규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부여
1년인증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인증유예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훈련성과 모니터링 평가 대상)

구분	유효기간 부여
보유등급 유지	○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조건부 인증	○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인증유예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3.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우수훈련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선정

□ 선정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각 영역별 배점의 75% 이상 획득

※ 2022년도 심사평가의 기준 및 결과를 적용하며, 2022년도에 현장평가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 ② 기관건전성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인 기관
- ③ 2020.1.1.~우수훈련기관 최종 선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사회적 물의 등 발생 이력이 없는 기관

- ④ 2019~2021년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이력이 없는 기관

- ⑤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된 기관

※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또는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 등으로 인해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유효기간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실적보유기관 유효기간(3년)에 추가로 2년 부여(최대 5년)

우수훈련기관 취소

□ 취소 요건

○ 우수훈련기관은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선정 취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나 인증유예로 조정

①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 처분 시 즉시 선정취소 및 우수 등급 혜택 배제

② 매년 실시한 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된 경우

※ 20점 이상 감점된 경우 우수훈련기관 취소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③ 직전 1년(인증평가 대상 기간) 간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④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수렴 결과,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단,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취소 및 혜택 배제

⑤ 매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시기별 우수훈련기관 취소 요건 >

선정시기	취소 요건
~2018년 선정 우수훈련기관	○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중 1개 이상 항목의 성과가 전체평균의 80% 미만인 경우
2019년~2021년 선정 우수훈련기관	○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중 1개 이상 항목의 성과가 전체평균의 90%미만인 경우

- ※ 성과평가 배점(60점 만점)의 40%인 24점 미만 획득 시에는 우수훈련기관 취소와 함께 조건부인증 부여(2023년도부터는 인증유예 부여 예정)
- ※ 일반취업률은 가중치를 미반영한 훈련기관의 성과(훈련직종별 취업률 산정이 아닌 통합 취업률 적용)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직자 훈련만 운영한 훈련기관은 일반취업률을 제외하고 산정
- ※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결과 모니터링은 훈련생 통합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
- ※ 우수훈련기관의 성과 모니터링 시 훈련기관별 성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기준은 매년 공고되는 심사평가 계획 공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취소 시점

- 우수훈련기관 취소 여부는 매년 인증평가 결과 발표 시*에 판정
 - 단,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취소 및 우수기관 혜택 배제
 - * 선정 취소요건에 해당하나 행정소송·심판 및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인해 해당 인증평가 결과 발표 시점에 우수훈련기관 취소가 보류되는 경우, 관련 행정소송·심판 종결(훈련기관 패소) 및 집행정지 실효 시 즉시 우수훈련기관 취소 적용
- 우수훈련기관은 취소되었으나 실적보유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인증 부여(차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우대혜택 배제

-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과정심사 등 우대혜택 배제, 우수훈련기관 인증마크 사용 불가
-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등급이 변동됨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우대혜택으로 적용되는 훈련과정 유효기간도 조정

1. 과정 적합 여부 판정

□ 과정심사 결과 : 적합, 부적합

- 심사 결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조건부 적합 포함) 또는 부적합 판정

- 조건부 적합으로 선정된 훈련과정은 해당 조건을 보완한 후 '조건부 심사'를 신청하여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야만 훈련실시 가능

<조건부적합 항목별 상세 설명 >

구분	상세 설명
훈련방법 조건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추가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훈련 교·강사 조건부	등록한 훈련 교·강사의 추가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록한 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기초 또는 기본) 이수가 필요한 경우
훈련시설 조건부	등록한 훈련시설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훈련장비 조건부	등록한 훈련장비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훈련교재 조건부	등록한 훈련교재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직종 조건부	신청한 NCS직종이 심사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혼합훈련 조건부	원격훈련 재량학습활동 및 평가방법의 추가·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조건부 심사 시 수정·보완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부적합 판정

2. 훈련과정 유효기간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부여
- 단, BHA 및 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음

VI. 유의사항

1. 훈련기관 사전관리 안내

□ 훈련기관 관리번호 사전검토

○ 부정·부실 훈련기관 재진입 방지 및 훈련기관 정보 관리를 위해 신규 기관 진입 시 훈련기관 관리번호 사전 검토 실시 중

- 행정처분 및 인증유예 이력 등 데이터*를 검증하여 기존 훈련기관 동일기관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기존 관리번호를 사용하도록 처리

* 훈련기관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 훈련기관 정보 변경(기관유형, 대표자, 소재지 등) 시에도 사전검토 후 변경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 직전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1년 인증' 이상 등급을 보유하고더라도 실시가능직종 미승인 시 해당 직종의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

- (신청기간) 2022. 1. 10.(월) 10:00 ~ 4. 22.(금) 18:00

*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훈련기관평가 → 2022년도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

* HRD-Net을 통해 실시가능직종 신청기한 내 신청 후 직종 처리상태의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특화사업 등의 경우에는 실시가능직종 신청 기간 별도 운영 예정

○ 실시가능직종 시설·장비 확인 필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가능직종 삭제 필요, 향후 발견 시 선정 취소·제외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학과(전공),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폐강 및 변경되어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 ▶ 삭제

○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시가능직종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2. 기본평가

-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반영

☞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 '본안') 제기 시,

- ①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

→ 본안 진행 중이라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

- ②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본안청구 인용 여부와 무관)

→ 집행정지의 실효일을 기준으로 인증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평가에 반영

*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모두 '집행정지'로 기재

*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모두를 '집행정지의 실효'로 기재

- 재정건전성평가 등 심사평가 자료의 발급처 직인이 없거나 테스트 페이지 제출 등 공신력이 없는 서류 제출 시 해당 항목 감점

3. 과정심사

선정제외 · 인정취소사유

- 훈련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해당 직종(NCS세분류)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산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과정 심사)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행정처분 내역이 있을 시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선정 제외 가능
- 유효한 인증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인증등급이 취소된 경우
 - 유효한 인증등급, 인증등급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적용*기준은 2022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최종 결과(신규기관, 실적보유기관)를 기준으로 함
 - *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등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등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촉계약을 하지 않은 훈련교·강사의 개인정보(HRD-Net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무단 활용*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훈련 과정을 선정 제외 또는 인정 취소할 수 있음
- *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혼합훈련의 경우, '2021년 민간 LMS 지원 대상 선정(2020년 선정 후 계약 연장 기관 포함)'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기관은 선정 제외
-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과정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훈련 교·강사

□ 훈련 교·강사 신청(훈련과정 심사 단계)

- 과정심사 시 교과목별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여부를 심사
- 훈련과정 교과목별 최대 3명까지 'NCS확인강사*'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 * 훈련교·강사는 자격, 경력 등을 HRD-Net(hrd.go.kr)에 등록 → 심사평가원 승인(40점 이상) 및 NCS 확인강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 * 강사 신청의 구체적인 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공지사항> 정책특화심사> [공지] (훈련강사용) NCS확인강사 신청매뉴얼(2021.10.05.) 참고
- **훈련 과정에 포함된 모든 교·강사는 2022년에 참여한 훈련 일 수 또는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과정심사 결과 공고 시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이라도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강사가 **2022.12.31.까지 기초 또는 기본 교육 대상*이 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정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훈련교·강사는 기초교육 2시간 이상 / 연간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교·강사는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 훈련교·강사 변경(훈련과정 운영 단계)

- 훈련과정적정성 심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교·강사(교과목별 최대 3명) 내에서만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 과정적정성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된 훈련교·강사(교과목별 최대 3명)를 다른 훈련교·강사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유사한 수준*의 훈련교·강사로 변경신청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의 변경인정을 받아야 함
 - * ① 기존 교강사 점수가 55점 미만인 경우, 변경예정인 교강사 점수는 해당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② 변경예정 교강사 점수가 55점 이상인 경우, 기존 교강사 점수와 관계없이 변경 인정
 - 단, 아래의 경우 변경신청 및 변경인정 절차를 거치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추가 심사* 실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1조 참조)
 - * 추가심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심사평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① 실업자국기 훈련과정을 최초로 운영(HRD-Net 실시신고)하기 전 훈련교·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② 실업자국기 훈련과정의 훈련교·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 예비군 훈련, 본인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변경신고함으로써 NCS확인강사가 아닌 자도 임시(월력상 15일 이내) 훈련교·강사로 활용 가능
- 훈련교·강사 변경이 빈번한 기관은 차기 과정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훈련 직종

- 훈련과정 신청시 반드시 신청한 훈련과정에 가장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분류코드 기재
- 해당 분류코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직종분류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훈련기관이 변경된 NCS 분류코드에 따른 실시가능직종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직종조건부적합' 판정

훈련과정 편성

□ 실업자 국기

-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은 반드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정의를 확인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편성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정 편성
 - 훈련내용이 실업자 국기 직종 정의와 부합하지 않을 시 '부적합' 판정
- 실업자 국기는 직종별 기준훈련시간 내에서 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기준훈련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 ※ 기준훈련시간 내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교과목별 훈련시간은 자율 편성, 국기직종·NCS 세분류·자격증별 기준훈련시간은 [붙임9] 참고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 81개 직종으로 변경되므로 별도 안내되는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실업자 계좌제

- 실업자 계좌제는 직종(NCS 세분류) 또는 자격별로 기준 훈련시간 내에서 과정 편성
 - ※ NCS 세분류·자격증별 기준훈련시간은 [붙임9] 참고
 - 초과편성 시 해당 사유, 교과목별 시간의 적정 여부를 심사
 - ※ 훈련기준상 권장훈련시간 초과 편성, 유사교과(능력단위) 중복 편성, 직무능력습득과 관련성이 낮은 교과 편성 등을 중점 심사
-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반드시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과정 편성

과정평가형 자격운영과정

□ 과정평가형 자격(실업자 국기직종 연계 과정)

- 아래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실업자 국기 직종 정의 및 편성 가이드 등에 따라 심사
 -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적정성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 심사
 - ※ 국기 신청한도, 성과심사 실적 포함

- 2021년, 2022년 운영 통합심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통해 승인받은 국가·과정평가형 연계 과정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한도 및 성과적정성, 산업·지역 인력수요심사 훈련성과 산정 시 반영(과정평가형 특화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정은 제외)
- 역량평가의 훈련성과 평가 시에는 통합심사, 특화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과정평가형자격(실업자 국기직종 연계) 현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실업자 국기직종	비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국기 직종명 변경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	국기 직종명 변경
전자출판기능사	출판	
웹디자인기능사	디지털디자인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정비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제작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설계제작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국기 직종명 변경

※ 관련 제도, 편성기준 등 상세사항은 과정평가형자격 홈페이지(c.q-net.or.kr)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100)에 문의

4. 역량평가

□ 평가대상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또는 인증평가 대상 훈련사업의 종료실적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또는 인증평가 대상기관(다년인증기관 모니터링 대상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인증유예 부여
- 본사,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훈련기관은 각각 인증평가 신청 필수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또는 인증평가 진행 중, 평가결과 발표 이후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훈련성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등급 취소 및 인증유예 부여

* 타 훈련기관의 정보를 임의 도용하거나 시설·장비가 인가된 것과 다를 경우 등

- 인증평가 실시 연도에 폐업, 향후 훈련미실시 등이 예상될 경우 사전 평가포기 신청 요망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또는 인증평가 포기신청 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며, 과정심사에서는 제외(일반고, K-Digital Training 등 특화훈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훈련성과 평가

- 2개 이상의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1개로 통합한 기관은 통합 전 관리번호별 훈련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실시
- 성과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과를 100% 달성*했으나, 등급별 배점 기준의 달성비율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예시) 수료율 100%(훈련생 전원 수료), 취업률 100% 등

- 성과 산출 대상이 되는 훈련생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
- 훈련생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다더라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자는 취업자로 불인정
- 훈련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훈련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이 어려운 인원*은 훈련기관의 평가대상 구분 및 성과평가 시 대상에서 제외(2022년 7월말 기준 반영)

* (전문)대학·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3주 이상 질병·부상자, 임신부,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요원 등으로,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유형을 파악 후 훈련생별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HRD-Net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완료 필요(지방고용노동관서에 승인된 사항만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현장평가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 현장평가일은 각 기관별로 개별 안내.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으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현장평가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심사평가원으로 즉시 통보 후 평가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현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현장평가의 질 관리 또는 평가 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증빙자료 촬영 등으로 수집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체계 점검 및 현장평가 품질 관리 등을 위해 현장평가 참관 가능
- 현장평가 장소는 반드시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기관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인증유예 등 불이익 부여 가능
- 훈련운영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처분 발생 시 해당내역 평가에 반영(2022년 평가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내역 확인)
- 작업장 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훈련 중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훈련분야(예시: 3D프린팅 등)의 경우, 환기장치 설치, 온습도관리, 밀폐형 장비 활용 등 작업장 내 실내환경 확인 및 기관의 안전사항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 확인 후 평가에 반영

□ 현장평가 참여 및 인증등급 유효기간

- 2023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중 2022년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 신규 우수훈련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참여 필수

- 2022년도 기본평가, 역량평가 점수를 토대로 결과 발표일에 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 새로 부여(기존 등급 및 유효기간 등 종료)
- 기존 우수훈련기관이라도 현장평가 참여 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발표일에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이 신규 부여되며, 기존 우수훈련기관 지위 및 우대혜택은 종료

※ 2023.1.1.부터 신규 획득 등급에 대한 효력 발생, 기존 등급 및 유효기간은 2022.12.31. 종료

5. 기타

-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므로, 입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신청 당시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비 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선정 가능(조건부적합 판정)
 - 단, 훈련실시 이전에 구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인정
- 지역 및 직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과정 신청*
 - * 적합률·모집률·개설률 등에 관한 심사지표 도입·변경을 통해 실적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훈련과정 실시신고 시 전자시간표(날짜, 시간, 교과목<능력단위>, 훈련장사 등) 활용
- 법 시행령 개정(2021.9.29.)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 확대 및 사업주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시간 완화
- 별도 세부사항 및 공고 관련 사항은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에 따름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에 대한 인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결과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VII. 향후 일정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일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심사평가 결과발표(10월중)와, 이의 신청 결과발표(11월말) 절차로만 진행됨(※ 최종 평가결과 확정절차 없음)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사전 오픈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심사평가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일원화 신청 화면 임시 저장 기능	22.4.18.
2. 심사평가 설명회	-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게시 (HRD-Net,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2.4.13.
	- 심사평가 설명회 영상 게시 (HRD-Net,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2.4.19.
	-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책자 우편 배송 시작	22.4.22.
3. 심사평가 신청 접수	-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접수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신청, 단 원격훈련과정은 별도 심사일정에 따라 접수	22.5.2~5.11.
4. 기본평가	- 준법성, 재정건전성 등 기관건전성 평가	22.5.12~6.1.
5. 정정·보완기간	-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신용등급이 원클릭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은 훈련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등 보완 - 훈련교재, 시설·장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강사 신청정보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정정 가능 ※ 과정심사 신청서 회수 및 훈련내용 변경 또는 인증평가의 자체 평가보고서 등 현장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정정 불가	22.6.2~6.7.
6. 현장평가 실시	- 훈련기관별 현장평가 실시 ※ 기관 및 운영자료 검토, 시설장비 점검, 기관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	22.6월~9월
7. 심사평가 결과 발표	- 인증등급 및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22.10.21.
8. 조건부 심사 신청	- 조건부 적합훈련과정의 조건부 항목 보완 및 보완 결과 확인 심사 신청 ※ 과정심사 이의신청 승인 과정의 조건부 심사 기간 포함	22.10.21. ~ 22.12.31.
9. 이의신청 접수	- 발표된 인증등급 및 과정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 (HRD-Net에 결과가 게시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2.10.21. ~ 22.10.27.
10. 이의신청결과 발표	- 이의신청 결과 발표	22.11.30.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수시 및 특화심사 일정

□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구분		선정계획 공고	선정결과 발표
K-디지털트레이닝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22년 하반기	22년 4월	22년 7월

*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2023년부터 기업맞춤형 국가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포함 예정

□ 일반고 특화과정 및 과정평가형 훈련 등 별도 수시 심사

구분	선정계획 공고	선정결과 발표
23년 운영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22년 9월	22년 11월
23년 운영 과정평가형 훈련과정	22년 8월	22년 11월
23년 운영 중앙부처국기 훈련과정	22년 10월	22년 12월

*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주 위탁(집체) 훈련 수시 심사

- 개별기업 훈련수요에 맞춤화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위탁 훈련과정에 한하여 별도 수시심사 진행
- 해당기업 외 다른 위탁기업 훈련은 불가하며, 심사 시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기업과 위탁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문의처 안내

문의사항	문의처
HRD-Net (심사평가시스템)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www.hrd.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문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 Q&A (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or Q&A)
NCS 확인강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 Q&A (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or Q&A)
혼합훈련 컨설팅 문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 Q&A (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or Q&A) (www.ksqa.or.kr > 기본 화면 하단 > 혼합훈련컨설팅 신청)
공공콘텐츠 및 STEP 이용문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https://shub.step.or.kr → 고객지원 → 질의응답)

□ 실적보유기관(집체)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준법성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금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야 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가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 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100점)	성과평가 (60점)	<p>○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사업주훈련제외)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p>*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취업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 유형 중 특정 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적용하고,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p>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 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 취업자수</th> <th style="width: 10%;">200명 미만</th> <th style="width: 10%;">200명~ 400명미만</th> <th style="width: 10%;">400명~ 600명미만</th> <th style="width: 10%;">600명~ 800명미만</th> <th style="width: 10%;">800명~ 1,000명미 만</th> <th style="width: 10%;">1,00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1</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r> </tbody> </table> <p>※ 고용유지기간 등 타지표에는 가중치 비적용</p> <p>※ 훈련직종별(NCS 대분류별)로 각각 일반취업률을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직종별 수료인원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부여한 점수가 더 높을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p> </div>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 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p>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미만	400명~ 600명미만	600명~ 800명미만	800명~ 1,000명미 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미만	400명~ 600명미만	600명~ 800명미만	800명~ 1,000명미 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고용유지기간 (10점)	<p>○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100%)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0.7.1.~2021.6.30.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사업주훈련제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일반고 특화훈련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담기준)은 고용유지기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취업지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수요자만족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내일배움카드훈련만 운영한 경우, 훈련과정 참여인원의 응답점수를 응답자수로 나누어 점수 산출 -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주위탁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훈련별 훈련과정 참여자 응답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산출* 후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주위탁훈련의 수료인원의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사업주위탁훈련은 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5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수료율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훈련시간에 따른 그룹별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 [(해당 기관 수료율 ÷ 그룹별 전체 평균 수료율) × 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 실업자훈련생 중 조기취업자 인원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훈련기관별 평균 훈련시간 기준(인증평가 대상 훈련과정의 평균훈련시간(운영회차의 훈련시간 합산)으로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시간 미만 ② 40시간 이상 ~ 140시간 미만 ③ 140시간 이상 ~ 500시간 미만 ④ 500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여 등급 산정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과정(제1차~12차, 14차) 및 추가 평가 실시 과정의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산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p>* 13차 과정평가형 과정 이수자평가 등</p> <table border="1" data-bbox="651 322 1449 524">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h>미실시평가포기행정처분</th> </tr> </thead> <tbody> <tr> <td>집체훈련</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d>0점</td> </tr> <tr> <td>혼합훈련</td> <td>12점</td> <td>10.5점</td> <td>7.5점</td> <td>현장평가 45점 서면평가 3점</td> <td>0점</td> </tr> </tbody> </table> <p>- 산출식(집체훈련과정 기준): [(A등급 과정수×12) + (B등급 과정수×9) + (C등급 과정수×6) + (D등급 과정수×3) + (미실시평가포기행정처분 과정수×0)] ÷ (2021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 + 추가신청 등 2021년 훈련이수자 평가 과정 전체)</p> <p>○ 대표과정 외 추가신청 과정, 과정평가형과정, 혼합훈련과정 등 포함</p> <p>○ 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기관은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이수자평가 대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자평가에 미참여할 경우 해당과정은 0점 처리 (이수자평가 시 동일과정 판단은 '훈련과정코드' 기준)</p> <p>○ NCS 소분류 기준 동일 소분류 내 비NCS 과정만 운영하고 해당 과정의 이수자평가 결과(이수자 현장평가를 실시한 과정만 해당)가 훈련기관 전체 평균 미만일 경우 평균값 부여(※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부터 미적용)</p>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시평가포기행정처분	집체훈련	12점	9점	6점	3점	0점	혼합훈련	12점	10.5점	7.5점	현장평가 45점 서면평가 3점	0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시평가포기행정처분															
집체훈련	12점	9점	6점	3점	0점															
혼합훈련	12점	10.5점	7.5점	현장평가 45점 서면평가 3점	0점															
	개설률 (3점)	<p>○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 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산정대상: 신청일 기준 2020.1.1.~2020.12.31. 승인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 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p> <p>-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p> <p>○ 통합심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과정 등 인증평가 과정 전체대상(반납 신청한 훈련과정 및 유효기간연장심사로 승인된 훈련과정 포함)</p> <p>○ 유효기간 연장심사 과정은 유효기간연장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p> <p>○ 산정대상기간 내 승인과정이 없는 등 개설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 점수 부여</p> <p>○ 훈련과정코드 기준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p>																		
	가점 (최대 5점)	<p>○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3점)</p> <p>- 수료생 중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근로복지공단 산정 월평균 보수액 기준)</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고용보험가입 취업자 평균임금</p> <p>○ 혼합훈련 LMS 구비 및 혼합훈련 과정 종료 실적(2점)</p> <p>- 혼합훈련 LMS 구비(1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가</p>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현장평가 (40점)		<p>점 1점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655 309 1453 560"> <thead> <tr> <th>구분</th> <th>가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민간 LMS</td> <td>202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2022.7.31.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td> </tr> <tr> <td>STEP 학습관리시스템</td> <td>2021.1.1.~12.31.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td> </tr> <tr> <td>자체 LMS</td> <td>2021.1.1.~12.31.까지 자체 LMS 활용 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td> </tr> </tbody> </table> <p>- 혼합훈련 과정 종료실적(1점) : 2021.1.1.~2021.12.31. 기간 내 혼합훈련 과정 종료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부여</p> <p>※ 혼합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에 한하여 가점 부여(기존 승인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p>	구분	가점 기준	민간 LMS	202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2022.7.31.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STEP 학습관리시스템	2021.1.1.~12.31.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자체 LMS	2021.1.1.~12.31.까지 자체 LMS 활용 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구분	가점 기준								
	민간 LMS	202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2022.7.31.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STEP 학습관리시스템	2021.1.1.~12.31.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자체 LMS	2021.1.1.~12.31.까지 자체 LMS 활용 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감점 (1점)	<p>○ 2021년에 정부지원 LMS(민간 LMS 임대, STEP 학습관리시스템)를 분양받은 후 산정 시점(2022.7.31.)까지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p> <p>※ LMS 분양 후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을 경우 감점 대상에 해당</p> <p>※ 민간 LMS 임대사업과 STEP 학습관리시스템 분양에 모두 참여한 경우, 각 LMS에서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발생해야 함</p> <p>※ 훈련과정 개설 실적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p>									
기관경영 (6점)	<p>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p> <p>※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포상 이력 확인 시 우대</p> <p>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p> <p>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p>									
훈련과정 관리 (8점)	<p>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과정개발 관련 경진대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평가 우수사례 공모전 등) 수상경력을 보유한 경우 우대</p> <p>※ 비대면(온라인)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확인 시 우대</p> <p>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p> <p>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p>									
시설 및 장비 (10점)	<p>①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기관의 시설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p> <p>※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 작업장 내 실내환경 확인 후 반영</p> <p>②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기관의 장비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p> <p>③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등의 처분 발생 내역 확인 후 반영</p>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 안전사항과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후 반영
	훈련전담인력 (1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 훈련기관의 스타훈련교사(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 양성(배출) 실적 및 근무 실적 확인 시 우대 ④ 훈련전담인력은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가? ⑤ 훈련전담인력은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훈련생 관리 (6점)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집체)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준법성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 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금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현장평가) (100점)	기관경영 (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설 및 장비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기관의 시설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 기관의 장비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 ③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 ※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 작업장 내 실내환경 확인 후 반영 ④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 ※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발생 내역 확인 후 반영 ※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 안전사항과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후 반영
	훈련전담인력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 훈련교강사 중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자가 과반일 경우 우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행정인력 중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자가 과반일 경우 우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 보수교육 참여 인원이 과반일 경우 우대 ※ 훈련기관의 스타훈련교사(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 양성(배출) 실적 및 근무 실적 확인 시 우대
	훈련생 관리 (15점)	①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의 훈련 참여 목적과 사전지식 수준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 실적보유기관(원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야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이건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 평가 (100점)	성과평가 (60점)	훈련별 지표 (40점)	실 업 자	<p>○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p>*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p> <p>(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 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취업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적용하고,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p>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 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관 취업자 수</td> <td>200명 미만</td> <td>200명~ 400명 미만</td> <td>400명~ 600명 미만</td> <td>600명~ 800명 미만</td> <td>800명~ 1,000명 미만</td> <td>1,000명 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r> </table> <p>※ 고용유지기간 등 타지표에는 가중치 비적용</p> <p>※ 훈련직종별(NCS 대분류별)로 각각 일반취업률을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직종별 수료인원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부여한 점수가 더 높을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p>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 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p>	기관 취업자 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 미만	400명~ 600명 미만	600명~ 800명 미만	800명~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기관 취업자 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 미만	400명~ 600명 미만	600명~ 800명 미만	800명~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고용유지 기간 (10점)	<p>○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100%)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180일 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0.7.1.~2021.6.30. 훈련과정 수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p>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일반고 특화훈련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담기준)은 고용유지 기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p>○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 취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 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p>
	수요자 만족도 (10점)	<p>○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p>○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p>
	중도 탈락률 (10점)	<p>○ 중도탈락률 21% 미만일 경우 만점(10점) 부여, 1%p 증가(21%부터) 시마다 0.5점씩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산출식: $[(\text{실시인원} - \text{수료인원} - \text{조기취업자}) \div \text{실시인원}] \times 100\%$
	과정운영 실적 (5점)	<p>○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산출식: $(\text{훈련기관 운영과정수} \div \text{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times 100\%$
	과정심사 적합률 (5점)	<p>○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간: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 - 산출식: $(\text{적합 과정 수} \div \text{심사신청 과정 수}) \times 100\%$ ※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p>○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5점)	<p>점수 부여</p> <p>※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p> <p>-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p> <p>○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p>
		가점 (최대 5점)	<p>○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3점)</p> <p>- 수료생 중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근로복지공단 산정 월평균 보수액 기준)</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고용 보험가입 취업자 평균임금</p> <hr/> <p>○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종료 기준)이 있는 경우(2점)</p> <p>- 개발실적: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p> <p>- 운영실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p> <p>○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1점)</p> <p>- 산정대상: 콘텐츠 탑재일이 2021.1.1.~2021.12.31. 내 해당하며, 탑재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훈련과정</p> <p>- 8차시 이상의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심사발급코드 有)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2점 부여</p> <p>- 그 외 8차시 이상 콘텐츠심사발급코드 無)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1점 부여</p> <p>※ STEP 마켓 내 8차시 이상 탑재되어 있어야 가점 대상 과정으로 인정 가능</p> <p>-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가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p> <p>※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 가점과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가점의 합산 점수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p>
		재 직 자	<p>○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p> <p>-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p>
		수요자 만족도 (20점)	<p>○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수료생</p>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p>입력 수강평 및 심사평가원 설문조사데이터</p> <p>○ 근로자 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p> <p>○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p>
	훈련과정 등급 (10점)	<p>○ 평가 대상년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p> <p>- 산출식: [(A등급 과정수×10점) + (B등급 과정수×7점) + (C등급 과정수×4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p>
	과정심사 적합률 (5점)	<p>○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p> <p>- 산정기간: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p> <p>※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p> <p>- 산출식: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p> <p>※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p>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p>○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p> <p>-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p> <p>-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p> <p>○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p>
	가점 (최대 5점)	<p>○ 훈련과정 개발·운영(종료 기준) 실적이 있는 경우(2점)</p> <p>- 개발실적(1점):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p> <p>- 운영실적(1점):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p> <p>○ NCS훈련 개발·운영(종료 기준)실적 비율(1점)</p> <p>- NCS 훈련 개발실적(% 최대 0.5점): (NCS 적용과정수 ÷ 2021년도 승인된 과정수) × 100%</p> <p>- NCS 훈련 운영실적(% 최대 0.5점): (NCS 적용과정수 ÷ 2021년도 운영한 과정수) × 100%</p> <p>○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종료 기준)이 있는 경우(2점)</p> <p>- 개발실적: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p>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1점) - 산정대상: 콘텐츠 탑재일이 2021.1.1.~2021.12.31. 내 해당하며, 탑재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훈련과정 - 8차시 이상의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심사발급코드 有)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2점 부여 - 그 외 8차시 이상 콘텐츠심사발급코드 無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1점 부여 ※ STEP 마켓 내 8차시 이상 탑재되어 있어야 가점 대상 과정으로 인정 가능 -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가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 ※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 가점과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가점의 합산 점수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현장평가 (40점)	기관경영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포상 이력 확인 시 우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원격훈련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경력(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우대 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훈련인프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 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인력 실적 우대
	훈련생 관리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원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준법성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금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이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알' 또는 '검찰송치알'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 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100점)	기관경영 (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훈련인프라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인력 실적 우대
	훈련생 관리 (15점)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심사항목	심사기준	최종결과
① 훈련 내용	훈련과정명, 훈련목표와 훈련대상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81개)으로 신청한 과정이 직종정의에 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충족 ○미흡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훈련목표를 고려해 볼 때 총 훈련시간 및 교과목별(주제별) 훈련시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충족 ○미흡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교과목에 적정한 훈련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② 훈련 방법	훈련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충족 ○조건부
	훈련목표 성취 및 내용 습득을 위해 적절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③ 훈련 교·강사	훈련교·강사가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최소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충족 ○조건부
	훈련과정에 포함된 모든 훈련교·강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훈련과정의 교과목별 모든 교·강사가 보수교육(기초 또는 기본)을 이수했는지 여부로, '22.1.1.~9.30.까지 훈련에 참여한 일 수 또는 시간이, · 15일을 초과한 경우 기본교육(12시간) 이수 여부 심사 ·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기본교육(12시간) 이수 여부 심사 · 15일 또는 140시간 이하인 경우 기초교육(2시간) 이수 여부 심사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④ 훈련 시설	훈련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면적이 적정한가?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훈련시설을 구비하였는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⑤ 훈련 장비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가? 산업현장 활용도, 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사양(내구연도 등)이 적정한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 조건부 판정되면 평가점수는 '0점' 처리, 조건부항목: 훈련방법,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강사(보수교육 관련), 훈련교재

붙임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혼합훈련 심사항목 및 기준

○ 혼합훈련은 [붙임3]의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 기준과 다음의 혼합훈련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혼합훈련 운영 전략이 미흡하거나, 집체-원격 교과 간 내용이 과도하게 중복되는 등 연계성이 부적정한 경우 기존 승인 이력이 있어도 현재 심사 기준에 따라 부적합 판정
- 자체 또는 조달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은 2022.6.30.(목) 18:00까지 활용하는 LMS에 전체 콘텐츠를 탑재* 완료해야 하며,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 미흡 판정

* 공공콘텐츠만 활용하는 과정은 콘텐츠 제출(탑재) 제외

<혼합훈련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혼합훈련 전략	① 원격훈련(콘텐츠, 쌍방향훈련) 운영 중 훈련생의 학습 수준 및 학습 환경 등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② 혼합훈련에 대한 진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혼합훈련 연계성	① 원격보조훈련의 재량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① 원격보조훈련에 적합한 LMS를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① 훈련목표와 대상, 혼합훈련 실시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집체-원격훈련(콘텐츠)간 연계가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미흡
	② 원격보조훈련 콘텐츠의 품질* 및 내용이 적정한가? * 자체콘텐츠 제작 컨설팅을 받은 훈련과정은 콘텐츠 품질 심사 완화	
	③ 원격훈련(콘텐츠)과 집체훈련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았는가?	
④ 집체·원격교과 편성비율(집체 및 원격 교과 합산 직업기초능력 시간 10% 초과 여부 등) 최소 원격훈련 시간, 전공콘텐츠 편성 여부 등이 적정한가?		
⑤ 그 외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에 따른 혼합훈련 요건을 충족하는가?		

<원격훈련 유형별 지원단가>

원격훈련 유형		정의	지원단가
원격보조훈련	자체콘텐츠	·훈련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자체·외주 제작 콘텐츠* * 공동 제작인 경우 훈련기관의 콘텐츠 개발 기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체콘텐츠로 인정	NCS직종별 지원단가의 130%
	조달콘텐츠	·훈련기관이 콘텐츠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허가계약 등을 통해 조달한 콘텐츠(임대콘텐츠 등)	NCS직종별 지원단가
	공공콘텐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콘텐츠	4,600원
쌍방향훈련		·참여자의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Zoom, Skype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NCS직종별 지원단가

붙임5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고급 및 특화과정 훈련비 심사항목 및 기준

○ 아래 ①, ②번 항목은 모두 충족하고, ③훈련대상자, ④실습비 중 1개 이상 추가로 충족할 경우 고급 및 특화과정으로 인정

번호	구분	고급과정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특화과정(사업주 위탁만 가능)	
			중소기업특화 (사업주 위탁)	고숙련·신기술 분야훈련* (사업주 위탁)
① (필수)	훈련 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성(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현장 등) · 산업현장실무 경력자 우대 및 전공, 경력, 자격 사항이 적절한 경우 인정		
② (필수)	훈련 내용	· 난이도가 높거나(Level 5 이상)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과정 · 자격증 취득과정은 고급 및 특화과정에서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차별 또는 특화된 과정으로 판단 시 인정 가능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훈련 분야(생산관리·품질 관리, 기술경영) 중 특화과정(Level 4 이상)	· 고숙련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실습) 시간을 전체 훈련시간의 30% 이상 편성 · (고숙련분야)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훈련 · (신기술분야)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활용, 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 또는 29대 신기술분야훈련 및 SW분야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신기술 29개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6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코업, 수소, 양자, 우주 등 * (SW분야) SW 개발 및 구축: 프론트엔드, 모바일, 백엔드/서버, 게임, 임베디드, 데스크탑 네이티브, 연구 및 알고리즘 모델링
③	훈련 대상 자	1) 선행학습 :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level 4 이하의 능력단위 (고숙련의 경우 5수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중급과정을 이수한 자, 채용예정자 등 * 신기술분야 훈련은 수준에 상관없음 2) 직무경력 :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 3) 자격증 : 기사, 1급, 기술사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 * 1)~3)의 훈련대상자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 고숙련분야 과정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20%이상 참여 필수(과정별 20%가 아닌 전체 회차를 합한 인원의 20% 이상이면 가능)
④	실습 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 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고숙련·신기술훈련 지원 제외 대상

- ① 일반사무행정(컴퓨터활용, 리더십, 고객만족, 영업 등)
- ②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
- ③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훈련
- ④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단, 고숙련과정 중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고급자격 과정은 신청 가능)
- 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

□ 성과적정성 지표별 산정기준(실업자 계좌제)

구분	심사지표	심사기준
성과 지수 (50점)	취업률 (30점)	<p>○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취업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p>○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취업을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 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적용하고,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div>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30점 만점으로 환산</p> <p>※ 규모(취업인원)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p>
	고용 유지 기간 (20점)	<p>○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평균하여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p>○ 산정기간: 2020.7.1.~2021.6.30.(훈련종료일 기준)</p> <p>○ 고용유지기간 산정 후, 고용유지기간을 20점 만점으로 환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 <p>※ 규모(고용유지인원수)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p>
가점	혼합훈련 운영·개발 (최대 2점)	<p>○ 혼합훈련 심사 신청 과정 중 혼합훈련 종료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이 있는 과정(NCS소분류 기준)은 운영 실적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운영 실적 가점이 없는 경우 개발 가점 1점 부여</p> <p>※ 혼합훈련으로 승인 받은 과정만 해당하며, 기존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 미해당</p>
감점	정부지원 LMS 미개설 (1점)	<p>○ 2021년에 정부지원 LMS(민간 LMS 임대, STEP 학습관리시스템)를 분양받은 후 산정 시점(2022.7.31.)까지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은 1점 감점</p> <p>※ LMS 분양 후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을 경우 감점 대상에 해당</p> <p>※ 민간 LMS 임대사업과 STEP 학습관리시스템 분양에 모두 참여한 경우, 각 LMS에서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발생해야 함</p> <p>※ 훈련과정 개설 실적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p>

□ 산업·지역 인력수요 지표별 산정기준(실업자 국기)

○ 운영실적 보유한 과정(선정규모 90%)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지수 (60점)	취업률 (40점)	<p>○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p> <p>-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p> <p>*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p> <p>-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취업인원에 포함되지 않음</p> <p>○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 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적용하고,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p> <p>※ 규모(취업인원)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p>	
	고용 유지 기간 (20점)	<p>○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평균하여 산정</p> <p>-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p> <p>-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p> <p>-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p> <p>○ 산정기간: 2020.7.1.~2021.6.30.(훈련종료일 기준)</p> <p>○ 고용유지기간 산정 후, 고용유지기간을 20점 만점으로 환산</p> <p>- 고용보험가입 취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p> <p>※ 규모(고용유지인원수)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p>	
가점	우수기관여부 (5점)	<p>○ 우수훈련기관 3점, 최우수훈련(BHA)기관 5점부여</p>	
	혼합훈련 운영·개발 (최대 2점)	<p>○ 혼합훈련 심사 신청 과정 중 혼합훈련 종료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이 있는 과정(국직직종 기준)은 운영 실적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운영 실적 가점이 없는 경우 개발 가점 1점 부여</p> <p>※ 혼합훈련으로 승인 받은 과정만 해당하며, 기존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 미해당</p>	
감점	행정 처분 (10점)	<p>○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p> <p>○ 산정기간: 2021.1.1.~2021.12.31.(처분일 기준)</p>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해당 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3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구분	지표	산정기준	
		인정취소)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정부지원 LMS 미개설 (1점)	<p>○ 2021년에 정부지원 LMS(민간 LMS 임대, STEP 학습관리시스템)를 분양받은 후 산정 시점(2022.7.31.)까지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은 1점 감점</p> <p>※ LMS 분양 후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을 경우 감점 대상에 해당</p> <p>※ 민간 LMS 임대사업과 STEP 학습관리시스템 분양에 모두 참여한 경우, 각 LMS에서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발생해야 함</p> <p>※ 훈련과정 개설 실적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p>	

○ 운영실적 미보유 및 90% 미선정 과정(선정규모 10%)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훈련내용(2점)	<p>○ 과정적정성 심사 항목별 우수성을 3등급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만점으로 환산</p> <p>- 훈련교.강사 점수는 ① + ② + ③을 산정하여 10점으로 환산</p> <p>① 과정적정성에서 충족으로 판정된 NCS확인강사 점수 5점</p> <p>② 심사위원 정성평가 3점</p> <p>③ 충족으로 판정된 교.강사 중 해당 직종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보유비율 최대 2점</p>
	훈련방법(2점)	
	훈련교.강사 (10점)	
	훈련시설(3점)	
	훈련장비(3점)	
가점	우수기관여부 (5점)	○ 우수훈련기관 3점, 최우수훈련(BHA)기관 5점부여
	관련실적 평균취업률 (3점)	<p>○ 신청한 실업자 국기 직종으로 평균 취업률 이상 실적(실업자 국기, 계좌제)을 보유한 경우* 3점 부여</p> <p>* 국기 직종 또는 관련 계좌제 직종 취업률이 평균 이상일 경우 (계좌제 직종 소분류가 다수일 경우 1개 직종만 평균이상일 경우 적용)</p> <p>○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p> <p>-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p> <p>*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 맞춤형기병, 사회복지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p> <p>-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취업인원에 포함되지 않음</p> <p>○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align="center">< 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 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 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적용하고,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div>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규모(취업인원)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p>

구분	지표	산정기준								
	혼합훈련 운영·개발 (최대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훈련 심사 신청 과정 중 혼합훈련 종료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이 있는 과정(국기직종 기준)은 운영 실적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운영 실적 가점이 없는 경우 개발 가점 1점 부여 ※ 혼합훈련으로 승인 받은 과정만 해당하며, 기존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 미해당 								
감점	행정 처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 산정기간: 2021.1.1.~2021.12.31.(처분일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시정명령</td> <td>·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td> </tr> <tr> <td>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td> <td>· 훈련기관에 해당 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3점 감점</td> </tr> <tr> <td>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td> <td>·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td> </tr> <tr> <td>전 과정 위탁·인정제한</td> <td>·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td> </tr> </table>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해당 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3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해당 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3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정부지원 LMS 미개설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 정부지원 LMS(민간 LMS 임대, STEP 학습관리시스템)를 분양받은 후 산정 시점(2022.7.31.)까지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은 1점 감점 ※ LMS 분양 후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을 경우 감점 대상에 해당 ※ 민간 LMS 임대사업과 STEP LMS 분양에 모두 참여한 경우, 각 LMS에서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발생해야 함 ※ 훈련과정 개설 실적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 									

대분류	기간산업직종(28개)	전략산업직종(19개)	서비스산업직종(34개)
경영·회계·사무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문서작성가 (3)
교육·자연·사회과학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인,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건축목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가스설비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철도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치),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드론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5)
재료	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1)	
섬유·의복	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4)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1)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BI 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9)
인쇄·목재·가구·공예	특수인쇄 (1)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안전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 (1)	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지하수관리, 소음진동관리, 환경보건관리 (7)
농림·수산		종자생산·유통, 스마트팜구축 (2)	

붙임8

국가 중점사업 훈련직종

조선업 관련 훈련

조선 및 선박 수주 관련 직종(4개)	
플랜트 설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그린뉴딜 관련 실업자 국기

그린뉴딜 관련 직종(13개)		
기존 (8개 직종)	태양에너지	외선공사
	드론제어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친환경 건축시공
	스마트팩토리 운영관리	플랜트 건설
신규 (5개 직종)	기후변화대응관리	토양지하수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소음진동관리
	스마트물관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뿌리직종 실업자 국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뿌리 직종(13개)	
레이저가공	금형
특수용접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반도체장비설비	기계설계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생산기계
LED응용	밀링(머시닝센터)
산업용로봇제어	선반(CNC선반)
자동차도장	

○ **실업자 국기는 직종(국기)별 기준훈련시간 초과시 부적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42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변경 공고(2021.10.25.)에 따른 국기직종의 제외, 분리, 명칭변경, 통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심사 신청

○ **실업자 계좌제는 직종(NCS 세분류) 또는 자격별로 기준훈련시간 초과 편성시 ①초과 사유가 부적정할 경우 부적합 판정하며, ②제시된 시간 내 편성하더라도 교과목별 시간 산정이 부적정(과다·과소)할 경우 부적합 될 수 있음**

○ **혼합훈련은 집체·원격 교과의 연계성이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훈련시간을 일부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집체훈련 및 쌍방향훈련 교과는 반드시 기준훈련시간 내에서 편성해야 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별 기준훈련시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준훈련시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준훈련시간
3D프린터 운용	1,000	스마트팜구축	840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1,050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810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800	실내건축	900
LED응용	800	열·냉동기계	800
VR/AR 콘텐츠 개발	800	염색가공	700
가구설계제작	980	영상촬영드론조종	1,000
가스설비시공	700	외선공사	800
건축목공	700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800
건축설비설계·시공	1,000	자동차도장	1,100
게임콘텐츠제작	870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1,300
공공디자인	810	자동차차체정비	1,350
국제관광마케팅	600	전기기기제작	980
금형	1,150	전기시스템제어	930
기계설계 제작	1,000	전자시스템제어	1,000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1,250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1,300
기후변화대응관리	850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910
내선공사	870	정보통신설비	1,000
네트워크운영관리	970	제품 SW 구축(에너지관리)	500
녹색순환자원관리	680	제품디자인	800
드론 제어	830	종자생산·유통	500
디지털디자인	760	증강현실	900
디지털컨버전스	900	출판	720
레이저가공	1,000	측량	1,300
멀티미디어	850	측정	500
물류관리	680	친환경 건축시공	90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준훈련시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준훈련시간
밀링(머시닝센터)	850	클라우드 운영 관리	910
보석디자인	1,080	태양에너지	1,250
빅데이터 분석 및 UI전문가	850	토목시공	1,400
빅데이터 전문가	900	토양·지하수관리	680
사물인터넷(홈·산업 IoT)	1,000	특수용접	760
산업응용로봇제어	1,250	특수인쇄	1,120
생산기계	1,100	품질관리기술자	750
생태복원·관리	700	플랜트건설	850
선반(CNC선반)	850	플랜트설비	850
소음진동관리	680	핀테크	960
스마트 물관리	680	항공기정비	1,000
스마트웹&콘텐츠개발	950	환경보건관리	600
스마트의류	900		

□ NCS세분류별 기준훈련시간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01010102	프로젝트관리	80	14050104	조경사업관리	160
02010201	PR	120	14070103	롤러운전	160
02010202	광고	100	14070105	로더운전	160
02010301	마케팅전략기획	110	14070106	굴삭기운전	200
02010302	고객관리	100	14070401	지게차운전	180
02010303	통계조사	90	14070501	기중기운전(이동식크레인조종)	160
02020101	총무	150	14070503	타워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조종)	160
02020102	자산관리	300	14070504	천장크레인운전(천장크레인조종)	160
02020201	인사	170	14070505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조종)	400
02020202	노무관리	50	14070601	건설기계정비	260
02020301	비서	120	14080502	산업잠수	150
02020302	사무행정	150	15010101	기계설계기획	230
02030102	자금	120	15010201	기계요소설계	240
02030201	회계·감사	190	15010202	기계시스템설계	260
02030202	세무	210	15020101	선반가공	400
02040101	구매조달	220	15020102	밀링가공	500
02040102	자재관리	250	15020104	CAM	400
02040201	QM/QC관리	520	15030102	기계소프트웨어개발	290
02040301	물류관리	230	15030201	기계생산관리계획	320
02040302	수출입관리	150	15030202	기계자재관리	260
02040303	원산지관리	180	15050101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130
02040304	유통관리	230	15050202	냉동공조설치	180
03010606	무역금융업무	120	15050203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170
03020101	보험동향분석	140	15050204	보일러설치·정비	110
03020201	보험모집	180	15050301	오토바이정비	240
03020203	보험계약·보전	170	15050302	자전거정비	160
04020101	평생교육	110	15060101	자동차설계	350
04020201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50	15060301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250
0402020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교수	240	15060302	자동차엔진정비	250
04030102	기업교육	120	15060303	자동차새시정비	250
05010101	법무	140	15060304	자동차차체정비	150
05010201	지식재산관리	350	15060305	자동차도장	180
05020101	소방시설설계·감리	70	15060306	자동차정비검사	140
05020102	소방시설공사	240	15060401	자동차정비경영관리	160
05020103	구조구급	80	15060402	자동차정비현장관리	100
05020104	소방안전관리	100	15060502	자동차튜닝	110
05020105	위험물운송·운반관리	140	15080102	선체설계	160
05020106	위험물안전관리	110	15080202	선체조립	50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05020202	기업재난관리	50	15090301	항공기기체정비	150
05020203	방재안전대책관리	60	15090303	항공기왕복엔진정비	190
06010108	요양지원	50	15090305	항공기계통정비	110
06010201	병원행정	100	15090306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140
06010202	병원안내	120	15090308	소형무인기정비	160
06020403	감염관리	150	15100101	사출금형설계	320
07010102	사회복지조직운영	100	15100201	프레스금형설계	210
07010103	공공복지	110	16010401	도금	320
07010202	일상생활기능지원	160	16010402	금속도장	280
07010203	사회복지면담	90	16010501	피복아크용접	210
07010204	사회복지사례관리	40	16010502	CO ₂ 용접	210
07030101	보육	60	16010503	가스텅스텐아크용접	240
07020202	청소년상담복지	130	17010103	화학물질취급관리	240
07020101	직업상담	160	17020101	석유제품제조	100
07020102	취업알선	180	17040101	압출성형	80
07020103	전직지원	180	18020101	패션기획	280
07030102	산후육아지원	70	18020102	패션디자인	300
08010103	문화·예술경영	140	18020103	패턴	300
08010202	실용사진	200	18020104	비주얼머천다이징	350
08020101	시각디자인	190	18020201	제직의류생산	300
08020102	제품디자인	200	18020202	편직의류생산	120
08020103	환경디자인	230	18020204	패션소품생산	180
08020104	디지털디자인	290	18020205	한복생산	300
08020106	서비스경험디자인	400	18020301	의류유통관리	150
08020107	실내디자인	290	18020401	신발생산	250
08020108	색채디자인	110	19010101	수력발전설비설계	75
08020110	3D프린팅디자인	250	19010102	화력발전설비설계	70
08030101	문화콘텐츠기획	100	19010203	원자력발전설비운영	120
08030201	방송콘텐츠제작	380	19010301	송변전배전설비설계	70
08030202	영화콘텐츠제작	120	19010302	송변전배전설비운영	100
08030203	음악콘텐츠제작	200	19010303	송변전배전설비공사감리	240
08030204	광고콘텐츠제작	300	19010501	전기기기설계	80
08030205	게임콘텐츠제작	370	19010601	전기설비설계	110
08030206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310	19010602	전기설비감리	180
08030207	만화콘텐츠제작	390	19010603	전기설비운영	80
08030208	캐릭터콘텐츠제작	320	19010701	내선공사	140
08030209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360	19010702	외선공사	200
08030301	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	320	19010703	변전설비공사	120
08030402	영상촬영	460	19010801	자동제어시스템설계	170
08030405	영상그래픽	210	19010802	자동제어기기제작	280
08030406	영상편집	120	19010803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70
09010101	여객운송	80	19010804	자동제어시스템운영	350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09040105	소형무인기운용·조종	220	19020301	전자제품설치·정비	110
09040202	운항관리	240	19030401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120
09040203	항공안전	100	19030402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60
09040205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40	19030601	반도체개발	170
10010101	일반영업	120	19030801	로봇하드웨어설계	160
10020201	주택관리	360	19030802	로봇기구개발	350
10030101	통신판매	250	19030803	로봇소프트웨어개발	90
10030102	전자상거래	200	19031102	3D프린터용제품제작	195
10030201	매장판매	280	20010101	정보기술전략	80
11010101	보안	160	20010102	정보기술컨설팅	200
11010102	경호	120	20010105	빅데이터분석	190
11020101	환경미화	190	20010106	IoT융합서비스기획	90
11020102	가사지원	70	20010201	SW아키텍처	240
18030101	세탁	420	20010202	응용SW엔지니어링	280
18030102	수선	310	20010203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210
12010101	헤어미용	320	20010204	DB엔지니어링	220
12010102	피부미용	300	20010205	NW엔지니어링	180
12010103	메이크업	260	20010206	보안엔지니어링	360
12010104	네일미용	300	20010207	UI/UX엔지니어링	350
12010105	이용	270	20010208	시스템SW엔지니어링	320
12020101	결혼상담	50	20010301	IT시스템관리	210
12020102	웨딩플래너	80	20010302	IT기술교육	300
12020202	장례지도	300	20010303	IT기술지원	240
12030101	여행상품개발	170	20010401	IT프로젝트관리	120
12030102	여행상품상담	160	20010403	IT테스트	360
12030103	국내여행안내	170	20010404	IT감리	130
12030104	해외여행안내	130	20010502	IT마케팅	60
12030105	항공객실서비스	170	20010602	정보보호진단·분석	460
12030201	숙박기획·개발	210	21010106	김치·반찬가공	120
12030202	객실관리	120	21010109	음료주류가공	50
12030204	연회관리	300	21020101	제과	180
12030205	접객서비스	290	21020102	제빵	210
12030301	회의기획	120	21020103	떡제조	100
12030302	전시기획	80	22010102	편집디자인	320
12040401	스포츠이벤트	300	22020102	도자공예	300
12040404	스포츠정보관리	50	22020104	목공예	120
13010101	한식조리	160	22020105	금속공예	160
13010102	양식조리	120	22020106	가구제작	300
13010103	중식조리	100	22020107	섬유공예	160
13010104	일식·복어조리	130	22020201	귀금속가공	190
13010201	식음료접객	90	22020204	보석감정	180
13010203	커피관리	150	22020205	보석디자인	130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NCS세분류	NCS세분류명	기준훈련시간
13010204	바텐더	140	22020206	주얼리마케팅	120
13010205	식공간연출	150	23010103	수질환경관리	90
14010201	건설공사공정관리	300	23010201	대기환경관리	130
14020201	토공	140	23010202	온실가스관리	240
14020204	수중구조물시공	140	23030101	생태복원	200
14020207	상하수도시공	50	23050202	석유자원개발·생산	120
14030101	건축설계	200	23050501	태양광에너지생산	140
14030104	실내건축설계	280	23050601	에너지절약서비스	210
14030201	건축목공시공	300	23060101	기계안전관리	130
14030202	조적미장시공	100	23060103	건설안전관리	140
14030203	방수시공	150	23060104	화공안전관리	80
14030204	타일시공	220	23060201	산업보건관리	120
14030206	철근콘크리트시공	120	23060202	근로자작업환경관리	60
14030207	창호시공	500	24010106	버섯재배	80
14030208	가설시공	60	24010201	증자계획	190
14030209	수장시공	280	24010401	단위화훼장식	150
14030301	건축설비설계	350	24020106	애완동물미용	460
14030302	건축설비시공	140	24030102	산림조성	180
14050101	조경설계	180	24030202	산림보호	190
14050102	조경시공	180	24030301	임산물생산	110
14050103	조경관리	150			

□ 자격종별 기준훈련시간

자격종명	기준훈련시간	자격종명	기준훈련시간
가스기능사	100	용접기능사	240
간호조무사	1,520	용접기능장	480
건설안전산업기사	110	용접(산업)기사	570
건축목공기능사	250	워드프로세서	100
건축전기설비기술사	90	웹디자인기능사	150
게임기획전문가	400	위험물기능사	110
경비지도사(일반)	210	위험물산업기사	120
경영지도사(마케팅)	160	위험물기능장	150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60	유통관리사(2급)	90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150	이용사	350
국내여행안내사	160	이용장	25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200	인간공학기사	40
굴착기운전기능사	200	일반기계기사	180
귀금속가공기능사	230	일식조리기능사	80
기계가공기능장	200	자동차정비기능사	280
기계설계산업기사	150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50
기중기운전기능사	160	잠수기능사	80
도배기능사	250	잠수산업기사	120
떡제조기능사	70	장례지도사	300
도자공예기능사	220	전기공사(산업)기사	320
로더운전기능사	160	전기기능사	210
롤러운전기능사	160	전기기능장	300
물류관리사	320	전기기사	320
미용사(네일)	320	전기산업기사	320
미용사(메이크업)	260	전기안전기술사	90
미용사(일반)	350	전기응용기술사	90
미용사(피부)	300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200
미용장	250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200
발송배전기술사	90	전산회계운용사	19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120	전자출판기능사	160
보석감정사	180	정보처리기능사	120
복어조리기능사	90	제과기능사	100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50	제빵기능사	120
사진기능사	300	조경기능사	180
사출금형(산업)기사	250	조경산업기사	250
사회복지사(1급)	130	조리산업기사(한식)	150
사회조사분석사 2급	60	조주기능사	180
산림기능사	210	중식조리기능사	80
산업안전산업기사	150	지게차운전기능사	180
세탁기능사	480	지도조종자(조종자격 미보유)	485

자격증명	기준훈련시간	자격증명	기준훈련시간
소방기술사	100	지도조종자(조종자격 보유)	355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40	직업상담사 1급	120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140	직업상담사 2급	240
소방시설관리사	160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160
스포츠경영관리사	170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180
승강기기능사	200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120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100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150
실내건축기능사	280	컴퓨터응용선반/밀링기능사	160
실내건축산업기사	200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0
양식조리기능사	110	컴퓨터활용능력 2급	100
양장기능사	250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160
에너지관리기능사	130	타일기능사	220
온수온돌기능사	60	특수용접기능사	330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소지자반 (사회복지사)	50	프레스금형(산업)기사	25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50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소지자반 (간호사)	40	한글속기 1급	200
		한글속기 2급/3급	160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소지자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한식조리기능사	110
		화훼장식기능사	150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240	화훼장식(산업)기사	170

□ 사업주 훈련과정(위탁)

[신청제한 분야]

- ①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다만,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은 제외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이나, 다음 교육 과정 제외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 ④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⑤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 ⑥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
-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⑧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 일반계좌제(실업자, 재직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청제한 분야]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④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⑤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 포함)
 - 다만,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⑧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